

2017년도 경상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2017. 4. 8.(토) 시행하는 2017년도 경상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7일
경상남도지사

1. 시험일시

시험일자	시험시간	계급	시험구분	채용분야	비고
2017. 4. 8. (토)	10:00 ~ 11:40 (100분)	지방소방사	공개경쟁 채용시험	일반소방 (남·여)	09:20까지 입실 완료
	10:00 ~ 11:00 (60분)		경력경쟁 채용시험	구 조 (남) 구 급 (남·여) 구급상황관리	

2. 시험장소

응시분야	응시 번호 및 인원		시 험 장	
	시작번호~끝 번호	인원	시험장명	주소(전화)
계		1,255	2개소	
일반소방 (남·여)	11990001~11990761	761	진주 동명중학교	경남 진주시 대신로 454-25 (초전동) ☎ 753-4658
	11100001~11100087 12990001~12990093	180	진주 중앙중학교	경남 진주시 모덕로 287 (하대동) ☎ 757-4812
구 조 (남)	13100001~13100026 13990001~13990070	96		
구 급 (남·여)	14990001~14990127 15990001~15990089	216		
구급상황 관 리	19990001~19990002	2		

※ 본인에게 배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 가능합니다. 타 시험장(학교)에서는 절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17. 4. 28.(금)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http://exam.gyeongnam.go.kr>)에 제2차 시험(체력시험) 장소와 함께 공고할 예정입니다.

※ 불합격자 개인별 성적 조회 : 2017. 4. 28.~5. 12,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4.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응시번호별로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고, 타 시험장(학교)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08:00 이후 시험실 개방)

다.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전까지는 문제 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 시험 시작 전 문제를 열람하였을 경우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라.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 접수센터 홈페이지(<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및 기타 자격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개명한 응시자는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법원의 개명 판결문 등)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출력한 응시원서 뒷면에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면지 사용 금지)

마. 답안지는 OMR기기로 판독하므로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예) 연필, 빨간 볼펜, 지우개, 수정테이프(수정액) 등 사용 금지]

바.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식수 및 화장지는 시험장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필요할 경우 응시자가 준비하여야 합니다.


※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 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사.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필기시험 전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와 자격번호,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인 경우 가점비율과 보훈번호 등 상세한 정보를 입력해야만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의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 란이 없습니다.)

※ 가산점을 입력하지 않거나 잘못 입력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리며,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입력(표기)한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 및 불합격 처리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아.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보기>와 같이 “●”로 정확하게 표기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귀책사유는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일단 표기한 부분에 대하여 정정(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하는 경우 해당 문항은 무효처리 됩니다.

<보기> 올바른 표기 : ● 잘못된 표기 : 

※ 답안지는 훼손 . 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 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자. 시험 종료 후 시험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차.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 감독관의 시험 종료예고 시간 고지 및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시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 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카.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 처분합니다.

타.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학교)의 주차시설 부족 및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시험장 전역(복도, 화장실, 시험장)에서는 흡연할 수 없으며, 특히 학교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하. 시험실에는 신발을 신고 입실할 수 없습니다. 각 시험실 출입구에 구비되어 있는 덧신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거. 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스마트워치, 녹화기능이 탑재된 기기(안경 등) 등의 **통신장비**와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의 **전산기기**를 시험실에 소지하고 입실할 수는 있으나, **시험시간 중에는 몸에 소지할 수 없습니다.** 소지한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반드시 시험시작 전에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차단한 후 소지품과 함께 시험장 전면에 비치하여야 하며, **시험시간 중에 소지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너.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 등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더. **시험 문제는 문제은행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비공개하며, 문제책은 시험 종료 후 회수합니다.**

러. 기타 의문 사항은 경상남도 인사과(고시교육담당, ☎ 055-211-3561) 또는 소방행정과(소방행정담당, ☎ 055-211-53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사항]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1항 제1호~제6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료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2항 제1호~제3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2항 제4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기타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한 시험 관리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